

자부심이 올랐다, 우미린이 유폴았다!

# 울산 다운2지구 우미 Lynn 더시그니처

본 안내문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한 참고자료로,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계법령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)을 통해 청약자격,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 청약자격 미숙지,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■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3조, 「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)

구분	내 용
대상자	<p><b>[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0.20.)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]</b></p> <p>①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, 부산광역시, 경상남도 에 거주                  ②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              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                 ④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(입양을 포함,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)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*                  *1인가구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(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) 미혼인 자녀(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)도 없는 신청자.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**는 전용면적 60㎡ 이하만 청약 가능                  ** 단독세대 :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(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)                  * '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 더 시그니처'는 전 주택형이 전용면적 84㎡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불가</p> <p>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                -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· 세액공제 ·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                 -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포함</p> <p>⑥ 「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                 - 소득기준 :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의 160%이하인 자                  - 자산기준 :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(160%)은 초과하나, 해당 세대의부동산가액기준 3억3,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</p> <p>⑦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                  -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지역별 · 면적별 예치금 충족</p>
당첨자 선정방법	<p>① <b>우선공급(50%)</b> :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% 이하인 자                  ② <b>일반공급(20%)</b> :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% 이하인 자                  ※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                ③ <b>추첨제(30%)</b> :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%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기준 3.31억원 이하 충족하는 자                  ※ 우선공급,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추첨</p>
경쟁이 있는 경우	<p>•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하고,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</p>
유의사항	<p>•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                 • 소형 ·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.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제9호 미적용)                  •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.                  •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는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.                  •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.</p>

※ 본 내용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 및 편집된 것으로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

